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578

발의연월일: 2025. 4. 3.

발 의 자:임오경·홍기원·임미애

신영대 · 김윤덕 · 박 정

한병도 • 이기헌 • 조계원

윤준병·김재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법률에 '인프라'라는 외국어를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어기본법」은 공문서 등을 알기 쉽고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프라'는 국립국어원의 표준 화 대상어이고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정비 대상 외 국어로 선정한 바 있음.

이에 외국어인 '인프라'를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8호).

법률 제 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8호 중 "인프라"를 "기반시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제3조(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생 략)	수립ㆍ시행 등) ① (현행과 같		
	음)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②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u>인프라</u> 구축에 관한 사항	8. <u>기반시설</u>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